

화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6. 7 화순군수
- 나. 회부일자 : '97. 6. 10
- 다. 상정일자 : '97. 6. 23 (제5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자 : 보건소장 이 대 현

나. 개정사유

○ 기존 보건소법령이 지역보건법령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보건의료심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의 평가등에 관한 자문기능을 수행함. (안 제2조)

나. 위원회는 군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화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등을 위원으로 한 20인 이내로 구성함 (안 제3조)

다. 위원회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함 (안 제4조)

라.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민병항)

○ 동 조례 제정안은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의료심의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률 근거를 마련키 위한 제정조례로서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

5. 토론요지

" 생 략 "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 수정가결 내용

- 제7조 (회의) 1항 "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를
"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로 수정가결

첨 부 : 화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부. 끝.

화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97-70 |
|----------|-------|

제출년월일 : 1997. 6. 7

제출자 : 화순군수

1. 제안이유

- 기존의 보건소법령이 지역보건법령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조례로 설치토록 규정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위원회는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자문기능을 수행함 (안 제2조)
- 나. 위원회는 군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화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등을 위원으로 한 20인 이내로 구성함 (안 제3조)
- 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함 (안 제4조)
- 라.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안 제7조)

화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군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군 보건의료 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보건소장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자로 한다.

1. 화순군민중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2. 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화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때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다.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보건의료 계획 수립 시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화순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기관에 대합 협조 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